# 언론인의 직업윤리 존중을 위한 거부권 행사 및 취재원 보호[1)]

## 1. 사건개요

2016년 10월 10일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미디어의 자유・독립・다원주의 강화를 위한 법률(loi visant à renforcer la liberté, l'indépendance et le pluralisme des médias)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을 헌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 조건[2)]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다.

상기 법률 가운데 상원의원은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에 관하여 규정한 제4조에 대하여, 하원의원은 언론인의 거부권에 관하여 규정한 제1조 및 미디어의 독립성 및 다원주의에 관한 규칙을 방송최고위원회가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제6조에 대하여 합헌성 여부를 심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016년 11월 10일 동 법률에 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사를 통하여 동 법률의 일부 조항이 위헌임을 선언하였다(부분위헌).

## 2. 결정

(1) 미디어의 자유・독립・다원주의 강화를 위한 법률의 다음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됨을 선언한다.

- 제4조
- 제27조
- 제30조, 패러그래프 I, « 4 »

---

1) Décision n° 2016-738 DC du 10 novembre 2016.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conseil-constitutionnel/francais/les-decisions/acces-par-date/decisions-depuis-1959/2016/2016-738-dc/decision-n-2016-738-dc-du-10-novembre-2016.148183.html

2) [헌법 제61조 제2항] 이와 같은 목적(법률의 위헌여부 심사)을 위해 법률은 공화국 대통령·수상·국민의회의장·상원의장·60인의 국민의회의원·60인의 상원의원에 의하여 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2) 동 법률의 다음 조항들은 헌법에 합치함을 선언한다.

- 제1조
- 제6조 제1항

### 3. 판결이유

(1) 심판대상법률 제1조는 1881년 7월 29일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에 제2조의2를 추가한다. 동 제2조의2 제1항은 언론인들에게 거부권(droit d'opposition)을 부여하고 있다. 거부권은 첫째, 동항의 첫 문장에 따르면 모든 압력을 거부하고, 그들의 취재원을 누설하는 것을 거부하며, 그들이 모르게 또는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형식 또는 내용이 수정된 기사 및 방송에 자기 이름을 써 넣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허용한다. 둘째, 동항의 둘째 문장에 따르면 이 거부권은 언론인들이 그들의 회사 또는 출판사의 직업윤리헌장에 대한 존중으로 형성된 그들의 직업적 신념에 반하는 행위를 수용하도록 강요받는 것을 막는다.

동조 제2항은 언론인과 그들을 고용한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그 회사의 직업윤리헌장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섭 및 윤리헌장 체결 방법을 구체화한 동조 제3항은 윤리헌장이 체결되지 않아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 언론인의 직업적인 진술 및 관례를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하원의원들은 언론인을 위하여 추가된 거부권의 토대를 두고 있는 직업적 신념에 대한 개념의 불명확성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그들의 권한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하원의원들은 상기의 거부권이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년 인권선언) 제4조로부터 나오는 책임원칙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발행인이 출판된 내용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는 범위 내에서, 상기 거부권의 실행을 통하여 텍스트 또는 방송의 출판 또는 보도를

거부할 가능성 또는 텍스트 또는 방송을 교정할 가능성이 박탈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 책임원칙 위반이라는 청구이유에 관하여 :

(3) 1789년 인권선언 제4조에 따르면, “자유는 타인을 해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동조로부터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인간은 누구든지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4) 입법자는 새로운 제2조의2 제1항 둘째 문장에 규정된 거부권을 추가함으로써 언론인에게 그의 고용인이 명한 일정한 행위를 수행하도록 하고, 만약 그것이 그들을 고용한 기관 내부에서 체결된 직업윤리헌장을 준수함에 따라 형성된 언론인의 직업적 신념을 해한다면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주지된 거부권은 발행인에게 편집자가 작성에 참여한 기사 또는 방송을 교정한 후 기사 또는 방송 작성자의 서명 없이 출판 또는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기사 또는 방송의 출판 또는 보도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발행인은 그가 출판 또는 보도하는 것을 승인한 (필요한 경우 교정 후의) 텍스트 및 방송의 내용에 따라 책임질 뿐이다. 즉, 책임원칙을 침해했다는 청구는 이유 없다.

- 소극적 무권한에 관한 청구이유에 관하여 :

(5) 헌법 제34조에 따르면, 법률은 공적 자유(libertés publiques)를 실행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인정된 기본적 보장에 관한 규칙과 근로권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법률은 시민 및 상업적 의무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다. 입법자는 헌법, 특히 제34조가 그에게 부여한 권한을 전적으로 수행할 의무를 진다.

(6) 언론인을 고용한 기관의 “직업윤리헌장을 준수함에 따라 형성된 언론인의 직업적 신념”을 참조하여, 입법자는 언론인이 그의 고용주가 요청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였다. 이 기준은 방송계의 요구와 고유한 관행,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그의 충성을 표시한 상기 직업윤리헌장을 따르고 있다. 이 기준은 불명확한 성격을 나타내지 않는다. 고용주가 요청한 행위를 수행할 것을 거부함으로써 제기된 소송에서, 판사는 사실관계가 입법자가 채택한 기준에 부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입법자는 거부권의 사용 조건을 충분하게 정했다.

(7) 제1조는 기타 다른 헌법적 요청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헌법에 합치한다.

- 제4조에 관하여 :

(8) 제4조는 취재원 보호에 관한 규정이다.

(9) 제4조 패러그래프 I은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2조를 개정한다. 새로운 동 제2조 패러그래프 I은 취재원 비밀이 보호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이러한 취재원 보호는 신문사 또는 온라인・방송 통신사의 언론인이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보를 수집하고 대중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재원 보호는 신문사 또는 온라인・방송 통신사에서 출판 또는 편집(rédaction)을 지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 및 편집에 협력한 모든 사람에게도 혜택이 있다. 취재원 비밀에 대한 직・간접적인 침해의 개념을 규정한 동 제2조 패러그래프 II은 예외적으로 오로지 중죄(crime)와 일정한 경죄(délit)[3]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한

3) 프랑스는 범죄를 불법의 중대성, 형벌의 유형, 관할 재판소, 시효에 따라 세 유형 즉, 중죄(crime), 경죄(délit), 위경죄(contravention)로 분류한다. 중죄의 예로서 살인죄, 강간죄 등이 있으며, 경죄의 예로서 절도죄, 횡령

경우에만 취재원 비밀에 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패러그래프 Ⅲ은 형사소송 중에 취재원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판사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패러그래프 IV는 문서, 영상, 기록이 민주사회에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전파된 정보를 포함한 경우에, 사용된 문서, 영상, 기록에 의하여 직업상의 비밀 위반죄 또는 수사·심리의 비밀을 위반한 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 패러그래프 I에 규정된 자들을 위한 형사면책에 대하여 새로이 규정하였다.

(10) 심판대상법률 제4조 패러그래프 II는 제707-183조에서 제706-187조를 포함하고 취재원 비밀 보호를 규정한 titre XXXIV를 통하여 형사소송법전 IV권(livre)을 보충한다. 제706-183조는 취재원 비밀 보호 조건 안에서, 그리고 새로운 titre XXXIV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형사소송 중에 취재원 비밀을 침해할 수 있을 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706-184조는 언론인들, 출판 또는 편집 업무를 지시하는 자, 그리고 그 편집에 참여한 자들이 사법경찰의 수사 또는 심리 또는 재판 중에 (무엇인가를) 들은(entendus) 경우, 그들은 그들의 활동 수행의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의 출처를 누설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그에게 그러한 취재원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통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06-185조는 한편으로,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2조 패러그래프 II에 규정된 예외를 조건으로 어떠한 수사 또는 심리 행위도 취재원 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취재원 비밀을 침해하는 목표를 가진 모든 수사 또는 심리 행위는 사전에 판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06-186조는 수사 또는 심리 행위가 취재원 비밀을 침해할 목적을 가진 경우, 형사소송법전 제56-2조에 규정된 심문은 상기 판사에 의하여 허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706-187조는 취재원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심문 중에 압류되거나 청구에 따라 획득한 문서, 영상 또는 시청각기록에 관한

---

죄, 차별, 근로자의 권리 침해, 성추행, 과실치사죄 등이 있고, 위경죄의 예로는 주차위반 또는 가벼운 폭력 등이 있다. http://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157(2016.12.27. 방문).

절차에 대한 서류 속에 (취재원에 관한 내용을) 보관하는 것과 교신이 차단된 내용을 옮겨 적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1) 심판대상법률 제4조 패러그래프 Ⅲ 1°에서 4°, 8°에서 9°는 취재원 비밀에 대한 침해는 누범 가중사유, 벌금 가산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패러그래프 5°에서 7°은 국방, 특수 부대의 비밀에 대한 일정한 침해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을 강화하고, 취재원 비밀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의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12) 1789년 인권선언 제11조에 따르면, "사상 및 견해의 자유로운 교환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저작하고 출판할 수 있다. 단 모든 시민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이러한 자유의 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의 행사가 민주주의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의 존중을 보장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표현 및 통신의 자유는 더더욱 소중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헌법조항도 특별히 언론인의 취재원 비밀권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13) 1789년 인권선언 제2조에 따르면,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훼손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이러한 권리는 자유·소유권·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 등이다." 동조에 의하여 선언된 자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 및 서신 비밀을 내포하고 있다. 상기 권리에 대한 제한이 헌법에 부합하기 위하여는 공익적 동기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그 목적과 수단 사이의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

(14) 헌법 제5조[4], 제20조[5], 제21조[6]로부터 국방에 관한 비밀은 국가의 독

4) [제5조] ① 공화국 대통령은 헌법의 준수를 감시한다. 공화국 대통령은 그의 중재를 통하여 공권력의 정상적 기능과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한다. ② 공화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및 각종 조약의 준수를 보

립과 영토의 보전과 같은 국가의 중요한 이익에 대한 수호의 성질을 띤다.

(15) 입법자는 한편으로,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와 다른 한편으로, 헌법적 가치를 갖는 권리와 원칙들 수호에 필요한 사생활 존중, 통신 비밀, 국가의 중요한 이익 수호, 범죄자 조사 및 공익 침해에 대한 예방 사이의 양립을 보장하여야 한다.

(16) 첫째, 입법자는 사람에 대한 폭행 또는 테러리즘을 벌하거나 또는 국가의 중요한 이익과 관계되는 일정한 경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취재원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입법자는 그러한 취재원 비밀 침해는 경죄를 중단시켜야 할 필요성 또는 그 경죄의 재발에 대한 특별히 높은 정도의 위험의 존재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입법자는 어쨌든 취재원 비밀의 침해는 불법적인 사건에서 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또한 입법자는 경죄의 중대성, 경죄 단속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 또는 공익의 절대적 필요성과 상관없이 경죄 진압 목적으로 취재원 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배제하였다.

(17) 둘째,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형사면책은 편집에 협력한 자들을 포함한 제4조 패러그래프 I에 언급된 자들 전체가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편집에 협력한 자들은 언론사 또는 온라인·방송 통신사 편집진 내의 그들의 직무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 편집, 생산 또는 전파하는 과정에서 취재원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보를 검토한 자로 정의된다. 이 면책은 대중에게 정보를 전파하는 것과 간접적인 관계만을 갖는 직업을 가진 자들까지도 보호

---

장한다.

5) [제20조] ① 정부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② 정부는 행정조직과 군조직으로 구성된다. ③ 정부는 제49조 및 제50조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제21조] ① 수상은 정부의 활동을 지휘한다. 수상은 국방에 대한 책임을 진다. 수상은 법의 집행을 보장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상은 행정입법 제정권을 행사하며, 일반공무원 및 군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수상은 그 권한의 일부를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수상은 공화국 대통령을 대리하여 제15조에서 규정된 국방최고회의와 국방최고위원회를 주재할 수 있다. ④ 수상은 명시적인 위임을 받아 특정한 의사일정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화국 대통령을 대리해서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한다. 한편, 상기 면책규정은 사생활 존중권 및 통신 비밀에 대한 침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5년의 금고형에 처하는 경죄, 즉 직업상의 비밀 위반을 은닉하고 사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하여 소추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무죄추정과 범죄자 조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은 형벌을 부과하는 경죄, 즉 수사와 심리 비밀을 위반한 것을 은닉한 것에 대한 소추를 금지한다.

(18) 전술한 바에 따르면, 입법자는 제4조의 규정을 통하여 (취재원보호에 대한 침해는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취재원의 형사면책 대상을 간접적인 관계를 가진 자들까지 포함하며 직업상의 비밀 위반을 은닉하고 사생활을 침해한 행위 및 수사와 심리 비밀을 위반한 것을 은닉한 것에 대한 소추를 금지함으로써) 한편으로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생활 존중권과 통신비밀 사이의 균형을 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법자는 (경죄의 중대성, 경죄 단속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 또는 공익의 절대적 필요성과 상관없이 취재원 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상기한 자유와 국가의 중요한 이익 수호, 범죄자 수사, 헌법적 가치를 갖는 권리와 원칙에 대한 수호에 필수적인 공공질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구들 간의 균형을 꾀하지도 못했다. 그러므로 다른 청구이유를 검토할 필요도 없이, 제4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제30조 패러그래프 I에 나타난 « 4 » 도 마찬가지로 헌법 위반이다.

- 제6조 규정에 관하여 :

(19)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3-1조에 추가된 제6조 1°은 한편으로 방송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가 정직, 독립, 정보 다원주의, 그리고 이에 공헌하는 프로그램들을 보장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 법률에 따라 텔레비전 및 라디오 서

비스 편집자들과 체결된 협정이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2조의2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는 것을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헌법 제34조에 따르면, “법률은 미디어 다원주의, 미디어 독립…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입법자는 헌법, 특히 제34조가 부여한 권한을 전적으로 수행할 책임이 있다.

(21) 첫째,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19조 1°에 근거하여, 방송최고위원회는 그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방송통신서비스의 편집자들로부터 청취할 수 있다. 동일한 목적으로 방송최고위원회는 제19조 2°에 근거하여 상기 편집자들을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입법자는 방송최고위원회가 정보의 정직성, 독립성 및 다원주의와 그에 공헌하는 프로그램들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통제방법을 정한다.

(22) 둘째,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28조는 정보의 정직성과 다원주의를 준수하여 방송최고위원회와 방송통신 서비스 편집자들 사이에 체결된 협정의 내용을 정한다. 마찬가지로 입법자는 방송최고위원회와 방송통신 서비스 편집자들 사이의 과거 협정 내용을 정했었다.

(23) 따라서 입법자가 권한 범위 위반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른 헌법적 요청을 위반하지 않은 제6조 1°은 헌법에 합치한다.

- 심판대상법률의 기타 조항에 대하여

(24) 헌법 제45조 제1항 마지막 문장에 따르면 “제40조와 제41조의 적용과 관계없이 모든 수정안은 비록 간접적이더라도 제출된 또는 이송된 텍스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제1독회에서 수리될 수 있다.”

(25) 심판대상법률 제27조는 지적재산권법전 제L. 132-44조에 규정된 언론인저작권위원회(commission des droits d'auteurs des journalistes)의 직무의 공동승인 유효화에 관한 권한을 수정하였다. 상원의 제1독회에서 받아들여진 이 규정들은 국민의회에 제출된 의회법률안에 나타난 내용과 간접적인 관련성조차 없다. 따라서 헌법에 반하는 절차에 의하여 채택된 제27조는 헌법에 위배된다.